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56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최형두·윤창현·윤한홍

양금희 • 이명수 • 김형동

강기유 • 이주화 • 태영호

이달곤 · 이철규 의원

(119]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 이 감소되고 영업활동의 제약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 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증대에 기여한 입주기 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 나. 입주기업이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법률 제 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증대에 기여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인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②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u><신 설></u>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여 고용증대에 기여
	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입주기업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인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를 감면할 수 있다